
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자살면책에 대한 증명의 관계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8745판결 -
(Conflict between Proof of Accident and Proof of Suicide :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745 Decided December 29, 2016)

김선정*
Sunjeong, Kim

〈국문초록〉

재해(상해)보험계약에서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지느냐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해요건의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가 부담하고 자살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실무상 재해요건의 증명에서 그 증명의 정도는 매우 약하다. 특히, 평석대상 판결과 같이, 보험금청구자의 재해요건에 대한 증명과 보험자의 자살에 대한 증명이 경합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자와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확연히 다르다. 먼저 보험금청구자가 재해요건을 충분히 증명하고, 그 다음 순서로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국 재해사고로 인정된다. 그 결과 자살면책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험약관의 규정 자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본의 유력설이다. 우리의 경우에도 약관을 모순 없이 해석하고 판례도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해석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그와 같은 과제를 남겨놓은 사례이다.

※ 국문 주제어 : 상해보험,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증명책임, 자살면책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법과대학 교수

투고일:2016. 12. 05. 심사일:2017. 01. 13. 게재확정일 2017. 02. 13.

I. 사실 관계 및 다툼

1. 기초사실

이 사건 망인(이하 ‘망인’이라 함)은 2000. 10. 30.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인 이 사건 원고 박○○(이하 ‘원고’라 함)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 생명보험회사(이하 ‘피고 생보사’라 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면 유가족 생활자금으로 매월 50만원씩 10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월 보험료는 31,000원이다.

원고는 2003. 11. 10. 어머니인 망인에 대한 가출신고를 하였다. 그로부터 무려 10년 이상 지난 2014. 6. 25. Y저수지 내에 망인의 차량이 빠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그 다음 날 위 차량 내에 망인이 사망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 당사자 사이의 다툼

원고는 망인이 2003. 11. 7. 경 고추를 사기위하여 Y저수지 옆길을 주행하여 가던 중 운전부주의로 위 저수지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라며 피고 생보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생보사는, 망인은 가출 전에 남편이 2003. 9. 20.경 북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3. 9. 21부터 2003. 11. 3.까지 13차례에 걸쳐 참고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살 인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망인의 진술에 의문점이 많고, 망인이 장판과 도배까지 새로 하고 망인 소유 마티즈 차량의 깔판 바닥을 교체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었던 점, 2003. 11. 7.경에는 검찰조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남편을 흥기로 살해한 후 차량에 싣고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2003. 11. 8.경 망인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남편에 대한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소외 다른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드러나게 되자 스스로를 지탱할 수 없게 되어 자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소

정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생보사는 설령 망인이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망인의 보험료미납으로 2004. 2. 25.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장이 발송·도달하여 그 무렵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원고의 주장대로 망인이 2003. 10. 27.경 사망하였다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위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5. 10. 27.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II. 소송의 경과

1. 제1심¹⁾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사망하였어야 하며 그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는 것인데, 위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볼 때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전부주의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2. 제2심²⁾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사실상 대부분 인용하였다. 법원은 “망인은 차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211794 판결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36734 판결

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는 직전이나 이후에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이유로 보험자가 면책하기 위해서는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밑줄 필자)”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자살에 대한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피고 생보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 생보사가 주장하는 보험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망인은 가출신고 당시인 2003. 11. 10. 무렵에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4. 2. 25. 보험계약해지 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망인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4. 12. 15.로부터 2년 이전에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2014. 6. 25. 망인의 시체가 발견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그 때서야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피고 생보사가 상고하였다.

3. 제3심³⁾

대법원은 피고 생보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법원은 기각이유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 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 사건 다툼은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3) 대상 판결

Ⅲ. 평석

1. 쟁점

이 사건에서 피고 생보사는 피보험자의 자살면책, 보험료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소멸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의 첫 쟁점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사고가 재해사고임을 증명하느냐 하는 것이므로 재해사고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고, 재해사고임이 증명될 경우 그 다음 단계에서 피고 생보사가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임을 증명하여 면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종래의 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재해의 증명은 보험금청구자가 하여야 하고, 자살의 증명은 보험자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항소심과 대법원은 재해증명은 느슨한 것으로 보고 자살증명은 엄격한 것으로 보았다.

2. 재해사고인지 여부

(1) 의의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 따라 보험사고로서 상해 또는 재해의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약관에서⁴⁾ 우연한 외래사고에 의하여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것을 보험사고의 요건으로 명시하는 점은 다르지 않다.⁵⁾ 많은 경우 급격한 사고일 것을 명시하기도 한다. 대상 판결에서는 이 사건 재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특히 우연한 사고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이 사건 항소심법원은 “망인은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하는 시점이나 이후에 사망

4) 재해와 상해의 요건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입장으로 양승규, “생명보험의 재해담보특약에 따른 재해사고”, 제남 강위두 박사 화갑기념논문집 상사법논총(하), 1996, 212면. 상법상 법률용어인 ‘상해보험’과 달리 ‘재해보험’은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고, ‘상해’를 포섭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기는 하나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中西正明, 傷害保險契約の法理, 有斐閣, 1992, 1~6頁.

5) 영미에서 accident는 단순히 ‘사고’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해의 요건인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의 가시적 원인(violent, accidental, external, and visible means)의 의미라고 한다.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외래적이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차량에 탑승한 채 저수지에 추락한 것이 자살일 가능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2) 요건

가) 우연성

흔히 우연성은 재해사고의 요건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우리 상법상 보험사고의 우연성은 상법상 상해보험부분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법 제638조의 보험계약의 의의에서 유래한다. 즉,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불확정한 사고’는 적어도 보험계약 성립시에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불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⁶⁾ 그와 같은 의미에서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하므로 고의로 초래된 사고는 우연한 것이 아니며,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므로(제659조) 보험사고 발생이 고의에 의하지 않을 것은 보험금청구권권의 발생요건은 아니라는 것이 된다. 위와 같이 제638조를 보험계약 ‘성립시점’에서의 보험사고 발생여부의 불확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종래의 입장에 반하여 상법 제638조를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의’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정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연성은 고의가 없다는 점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의에 의하지 않을 것이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연성의 증명 책임 역시 보험금청구자가 진다고 하게 된다.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6) 즉, 이 조항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시의 우연성, 즉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고여야 한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山本哲生, “保險事故の偶然性について”, 生命保險論集, No.160, 2007, 6頁.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장차 사고가 발생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을 ‘우연성’이라 하는 것과 구별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의 발생원인 또는 상해결과를 예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발성’으로 구별하여 표현하는 입장도 있다. 山下友信 外, 保險法, 第3版補訂版, 有斐閣, 2016, 351頁.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계약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것(사고우발성)을 의미한다.⁷⁾ 즉,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여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우연성은 재해사고의 요건이므로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 즉 고의에 의하지 않은 사고라는 사실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에게 있다. 문제는 어느 정도 증명하여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금감원 분조위’로 씀)는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채 사우나 안의 뜨거운 불가마방에 들어가 찜질을 하며 잠을 자다 변사체로 발견된 사안에서 질식사로 추정하였다.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음주 후 사우나 불가마방에 들어가 새벽 1시 30분 경 딸에게 사우나에서 자고 가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종업원에게 발견된 당일 아침 6시 57분 이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 변사사건조사서에 따르면 망인은 사우나 보석불가마실 입구 앞에 사우나 옷을 입은 채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고 온도가 높은 불가마실(약 74℃)에 오랜 시간 동안 있어 팔과 다리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로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의사의 사체검안서에 따르면 “직접사인 : 미상,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된 사안이다. 피신청인인 보험자는 이 사건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증명할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는 고온의 밀폐된 공간인 불가마방에서 질식사한 것은 피보험자가 예견하였거나 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급격성과 우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⁸⁾ 이에 비하여 다른 사례에서는 피보험자가 6. 23. 밤 21:50경 차량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23:10경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에 승차하는 모습이 목격된 후 행방불명되었다가 7.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55505 판결 등.

8) 금감원 분조위 2013. 5. 28.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3-13호. 한편 대법원(2008. 4. 24. 선고 2006다72734판결)은 피보험자가 음주 후 사우나나 불가마에 방치될 경우, 혈관의 과도한 확장에 의한 저혈압 및 부정맥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급사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심혈관질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도 급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바 있다.

3. 같은 시 소재 섬 사이 해상에서 변사체로 떠오른 사건에서, 보험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양경찰서의 ‘내사요지 및 경찰의견’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실족하여 해상에 추락, 익사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시체를 검안한 의원에서 작성한 시체검안 기록에 의하면 ‘물을 먹지 않은 상태(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됨)’라고 기재하고 있어 사고에 의한 익사로 추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망인의 유족은 부검을 거부하였다. 금감원 분조위는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추단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보험자의 주장을 인용하였다.⁹⁾

우연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에게 있다는 다수설과¹⁰⁾ 달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보험금청구자가 고의 없음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고의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¹¹⁾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는 과거에 재해분류표상 불의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불분명한 경우를 재해로 규정하였던 점을 근거로 한다. 또한 고의가 없었다는 소극적 증명은 실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청구자가 지도록 하면 보험금부정청구 등 도덕적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보험계약자측 보호가 불충분해지므로 독일보험계약법 제178조 제2항처럼 우연성은 반대의 증거가 있기까지는 추정된다는 편면적 강행규정을 두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¹²⁾ 이에 따르면 보험금청구자의 우연성에 대한 증명은 일응의 추정으로 족하다.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은 주장에 가까워 보이지만 이 점을 확실하게 설시하고 있지 않다.

나) 외래성

일반적으로 ‘외래’란 ‘내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상해, 재해, 사망 등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physical defect),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9) 금감원 분조위 2013. 7. 23.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3-14호.

10) 일본 최고재판소 2001. 4. 20. 판결, 民集55卷3号683頁.

11) 양승규, 앞의 논문, 213면. 일본 고베지방법판소 1996. 8. 26. 판결, 判夕934号275頁.

12) 최병규,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보험사고”,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3, 397면.

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은 외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¹³⁾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보험자인 의사가 병원운영 및 진료행위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진정제인 바륨을, 사고 1월 전에 연이어 2일간에 걸쳐 2차례 투여 받은바 있지만 그로써 약물중독의 입증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그 상태에서 의사가 직접 간호사에게 지시(구술처방)하여 자신에게 약물주사를 놓도록 하여 그 결과로 몇 분 후에 식물인간이 된 사고에 대하여, 비록 정상인의 경우 도저히 처방할 수 없는 과용량의 증추신경계 억제효과가 있는 진정제와 마취제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 자해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식물인간이 된 상태는 재해분류표상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에 의한 사고’ 또는 ‘의도 미확인 사건’ 으로서 외래적이고 우발적 사고여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가¹⁴⁾ 있다. 물론 피보험자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명확한 것은 외부성이 부인된다.¹⁵⁾

13) 피보험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잠을 자다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고는 술을 마신 외부적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외래의 사고’란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한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28114 판결. 또 평소 술을 좋아하고 주벽이 심한 편이었던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고 있던 택시를 세워 내린 후 교량 난간을 타고 넘어 도합 8.32m의 다리 아래로 뛰어 내려 강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망인이 사고 직전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여자 승객들에게 강에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사고 당시 사람이 강물에 뛰어 들면 사망할 수도 있음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기억 및 판단 등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사고작용 없이 단순히 반사적으로 반응하다가 급기야 명정(酩酊)상태에서 목적성을 상실한 나머지 충동적으로 다리 아래로 뛰어내려 익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망인이 추락 당시 병적인 명정상태에 있었던 이상 그 사고는 위 망인이 예견하지 못한 우발적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물에 의한 기도의 폐쇄이므로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위 망인에게 평소 주벽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명정에 이를 정도로 과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익사사고는 위 각 공제약관에서 사망공제금의 지급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해의 하나인 “익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위 공제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14) 금감원 분조위 2000. 8. 23.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00-39호.

15)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thinner)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보고 뇌교출혈이 보험계약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판결. 또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집에 와서 일종의 건강식품을 먹은 다음, 갑자기 구토, 호흡 곤란 및 심장 통증을 호소하며 혼수상태에 빠졌고, 이때 같이 있던 소외인 등이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발병

보험금청구자는 사고가 외래사고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질병면책조항이 보험금부의 요건으로 들어 있는 생보험 상품과 달리 손보험 상해보험상품에 있어서는 외래성요건의 증명에 대하여, 그 증명은 외부로부터 작용에 의한 사고라는 점과 그 사고와 피보험자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입증하면 족한 것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질병기인성에 대한 증명까지 떠안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의 손해가 자신의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¹⁶⁾ 외래사고가 질병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한다는 입장(부인설)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상해보험약관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입은 상해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의 우연성요건과 후자의 외래성요건이 표리관계에 있게 되고, 이처럼 보험금지급규정과 면책규정이 동일한 사실의 표리관계에 있는 경우에 약관규정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¹⁷⁾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심각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후 5 내지 10분이 경과하여 심장병 및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한 사건에서 술을 마신 후 건강식품을 먹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호흡 및 심장 박동이 정지되어 사망한 것으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음주 후 건강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인 것으로 보인다고 외래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충수염 수술로 인한 후유증 또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며 항소한다, 항소심법원은 피보험자가 술을 마신 후 집에 와서 건강식품(영양제)을 먹은 후 구토를 하고 호흡 곤란이 왔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증상이 온다고 할 수 없고, 무슨 술을 마셨는지, 어떠한 건강식품을 먹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피보험자가 이송된 위해시립병원 진단증명서에는 망인이 당뇨병 및 심장병력도 갖고 있었는데 심장병으로 급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 술을 마시거나 영양제를 먹은 사실과 심장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외래성을 부인하였다(서울고법 2002. 3. 14. 선고 2001나40826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유족에 의하여 상고되었으나 상고이유서불제출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02. 8. 14. 선고 2002다22656 판결).

- 16) 이른바 대항설로 수많은 논쟁을 불러 온 일본 최고재판소 2007. 10. 19. 판결, 判時1990号144頁.
 17)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松澤隆哉, “傷害保險契約における保險事故と偶然性・外來性-平成19年の外來性をめぐる三つの最高裁判決を契機として-”, 生命保險論集, No.164, 2008, 236頁.

다) 급격성

급격성에 대하여는 시간에 중점으로 두어서 비교적 단시기 내에 사건이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입장과¹⁸⁾ 주관적으로 사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주관적으로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예견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한 것을 뜻한다는 입장이¹⁹⁾ 있다. 앞의 입장은 원인이 되는 사고로부터 결과로서의 손해가 발생하기까지 그 과정이 직접적이며 시간적 간격이 없다는 의미로 본다. 이 요건은 시간적 간격이 없고 결과예측이나 결과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우연성 요건을 보완하고, 시간적 경과를 거치며 생기는 신체장애가 질병인지 상해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는 데도 존재의의가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급격성은 사고가 시간적으로 단시간 내 발생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상해 또는 재해사건의 발생과 그 작용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²⁰⁾ 그러나 상해 또는 재해사고에서 급격성을 얼마나 중요한 요건으로 보느냐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는 급격성을 상해의 요건으로 삼는데 비하여 영미법에서는 급격성보다는 우연성을 더 본질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급격성은 상해나 재해사고의 범위를 한정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거나 반드시 필요불가결한 요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다 본질적인 요건인 우연성의 한 요소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²¹⁾

-
- 18) 관련 사고가 완만하고 연속적으로 생긴 것이라면 비록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급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478면..
- 19) 수돗물에 미량의 수은이 존재하는 것을 모르고 장기간 마셔 어느 날 신체손상이 발생하면 급격성이 있지만, 광부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여 진폐증에 걸린 경우는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급격성이 없다는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243면. 약물복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처지에서는 급격하게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의 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약물 부작용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면 재해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 20) 최병규, 앞의 논문, 377면.
- 21) 생명보험표준약관 <부표4 재해기준표>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사고라고 하여 급격성 요건을 생략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 용어정의」에서는 상해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여 급격성을 열거한다. 이 점을 주목하여 급격성 요건의 의미를 작다고 보는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430頁.

(3) 직접의 원인

위에서 본 요건을 갖춘 우연한 외래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는 결과(사망, 후유장애, 입원·통원)에 대하여 소정의 기준에 따른 보험급부가 행하여지는데, ‘직접 원인’이란 재해 또는 상해사고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고, 사고의 원인과 발생한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를 한정하는 표현으로 읽힌다.²²⁾ 사고가 상해나 재해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빈번히 인용되는 1980. 5. 12.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판결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상해와 사망 간에 특히 ‘직접’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이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금청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나아가 그 원인관계가 단순히 경미한 영향이 있는 정도 또는 멀리 조건적 인과관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로는 충분하지 않고, 당해 상해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주요한 원인일 것을 요하는 것이라고 새겼다. 만일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상해와 다른 질병 등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것이 단독으로 또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나아가 그것이 통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복수의 원인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결과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때는 여러 가지 주요한 원인들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의 영향을 미쳤으면 되는 것이고 병존하는 다른 원인들에 비하여 보다 유력한 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백내장 수술경력 및 난소종양이 있었던 90세의 노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피보험자가 가진 기왕의 질환 등이 공동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재해로 인한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통상 일어나는

22) 이 사건 피보험자는 사고 직전까지 뇌일혈 후유증 및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스스로 운전할 정도로 회복되어 2일 후 한국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보험자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타박상을 입고 입원가료를 받았는데 비교적 순조롭게 치료가 진행 되던 중 입원 11일째 되던 날 돌연히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피보험자의 급성심부전에 따른 사망이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기왕증인 고혈압성 심질환을 원인으로 한 것인지가 다투어졌는데, 재판소는 상해가 사망의 주요원인으로서 질병 등 다른 복수의 사망원인이 함께 존재하는 때에는 그 상해가 통상 단독으로도 사망의 원인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다른 원인과 대체로 같은 정도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다른 원인보다 유력한 원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상해사망을 인정하였다. 小林登, “「傷害を直接の原因とする死亡」の意義”, 保險法判例百選, 有斐閣, 2010, 202頁.

원인결과의 관계에 있는 이상, 직접적 원인관계에 있다고 보았다.²³⁾ 이에 비하여 오전 5시 30분, 빗길에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던 피보험자가 교각난간에 충돌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앞부분이 물에 빠진 차량으로부터 냇가에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조수석 문을 열고 탈출하던 중 뒤 트렁크부 분까지 물이 밀어닥쳐 냇가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사고와 사망 간에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되는 만큼 ‘직접’의 결과성을 충족한다고 본 판결이²⁴⁾ 있다. 이 판결의 ‘직접성’ 인정에 대하여는 지나치다는 비판도 있다.²⁵⁾

한편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여러 개 있고 그 가운데 담보위험과 면책 위험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은 담보위험이 직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다고 보여 진다. 예컨대 보험계약자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선행원인)를 일으켜 동승자인 자녀가 중상을 입어 호송된 병원에서 수혈을 권하였으나 보호자인 보험계약자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수혈을 막아’ (후행원인) 자녀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서 선행원인이 사망의 직접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²⁶⁾ 이 사건의 쟁점은 본래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막은 것이 고의사고로 보험자 면책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4) 재해의 증명

대상 판결에서 다루어진 쟁점은 이 사건 재해사고의 증명과 자살면책의 증명 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보험료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 거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 여러 가지이다. 이 가운데 다른

23) 서울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나96152, 96169 판결.

24) 오사카고등재판소 1984. 4. 18. 판결

25) 일본 최고재판소 2007. 5. 29. 판결에서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손사고를 일으킨 후 차 밖으로 피하기 위하여 나왔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피난행동은 위험을 당한 자의 행동으로서 극히 당연하고 사망사고와 자손사고 간에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피보험자에게 다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해의 직접결과를 인정하였는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비판의견이 있다. 도쿄고등재판소 2009. 4. 28. 판결에서는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주행 중 눈에 차량이 굴러 떨어지자 차 밖으로 나온 후 눈에 넘어져 진흙물을 마시게 되었는데 폐렴이 발병하여 약 1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2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쟁점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크게 다툼 일은 아니었다. 이 사건 원·피고 간 승패를 가른 핵심은 재해사고의 요건을 증명하는 문제였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한 가출신고가 행하여진 이래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피보험자가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질병 등에 대한 의심도 없었던 만큼 재해사고의 급격성이나 외래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재해사고의 우연성요건인데 이 사건 피고는 피보험자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사망사실은 수사기록 등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증빙이 있는 것이어서 단지 피보험자가 그 자신 소유 자동차에 탑승하여 숨진 채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증명을 끝냈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가 추가적인 증명한 흔적은 없다. 피고가 재해사고의 발생을 통지한 것이 1단계였다면, 그 다음 단계로 원고 생보사는 면책사유로 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사고(자살)임을 주장·입증하여야만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 건의 동일한 사건에서 보험사고의 구성요소인 재해사고의 우연성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의사고라는 점에 대하여는 면책사유인 까닭에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사고의 우연성에 대하여 서로가 증명하여야 하는 증명책임의 소재와 분배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은 문제점은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법률요건분류설²⁸⁾ 따라 보험금지급사유는 ‘권리근거규정’에 관한 사실의 증명으로서 지급을 청구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권리장해규정’으로서 보험자측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에 기인한다. 우연성을 보험계약 체결시에 장차 보험사고의 발생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미로 새기는 입장이 있지만 상해 또는 재해사고의 요건으로서 ‘우연성’은 보험사고발생시에 보험계약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재해의 성립을 따지는 단계에 비중을 두고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자의 면책사유라는데 비중을 두고 판단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27) 이 점을 지적하는 山下友信, 前掲書, 451-454頁.

28) 입증책임분배에 관하여 법률이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범규범의 구조, 즉 조문의 형식이나 관계조문의 상호관계 속에서 입증책임분배의 기준을 찾으려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구성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이며 오늘날 일반적 경향이다.

높은 지점에서 추락, 자동차의 충돌, 해안에서의 굴러 떨어짐 등 사망사고에 대하여는 이것이 재해사고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자살행위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사고의 직접상황에 관한 증거만이 아니라 다양한 간접증거를 모두 취합하여 판단할 문제인데, 만일 증거가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이는 보험금부정청구를 어렵게 하여 보험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청구자의 청구권을 가급적 보장할 것인지를 문제에 귀착한다. 실제로 보험금청구자가 자살 등 고의가 없다는 소극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고의로 재해사망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확인적·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고의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증책임을 보험자에게 떠넘기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이다.²⁹⁾ 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고의면책규정은 그 존재의의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는 대법원과 약관이 경험칙상 소송사례에서 피보험자측의 자살이나 자상이 크게 의심스러운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재해의 성립요건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금청구자에게 지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송실무상 사실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곧 보험금청구자가 어느 정도로 증명하여야 증명책임을 다하느냐의 문제이다.

(5)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재해 또는 상해와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 존재에 대하여는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³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자

29) 江頭憲治郎, “傷害保險契約における偶發性の要件と主張・立證責任”, 保險法判例百選, 有斐閣, 2010, 196頁. 일본 최고재판소(2001. 4. 20)는 피보험자가 건물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보험금청구자가 피보험자의 사고가 우발적이라는 점, 즉 자살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재해로 보지 아니하였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한바 있다. 위 최고재판소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사고의 우발성에 대한 증명이 정도도 일응의 증명으로 족하지 않다고 한 히로시마고등재판소 2009. 4. 22. 판결은 피보험자가 해안도로 주행 중 추락·사망한 사고에서 우연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다. 岡本知浩, “保險事故の偶發性の立證責任と立證の程度”, 保險事例研究會レポート, 第256号, 2011, 10~19頁.

30) 사례를 보면 ① 피보험자가 과수원 돌담 보수를 위해 돌을 운반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되지만,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금청구자는 사망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망이 재해 또는 상해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망원인 및 사망원인과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까지 증명하여야 한다.³¹⁾ 그리고 사망원인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³²⁾ 상해 또는 재해사고만이 담보되는 보험사고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족이 사체에 대한 부검을 거부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보험금청구자가 감수하여야 한다.³³⁾

그런데 위와 같이 새기는 것이 원칙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보험금청구자가 재해 또는 상해의 우연성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하여야 하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피보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의 입술은 청색증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돌연사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이 위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한바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② 하급심 판결로, 피보험자가 다리에서 추락·사망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의 우연성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어 보험금청구자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물구경을 하다가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난간을 넘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서울고법 2011. 5. 18. 선고 2010나109055 판결). ③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하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라 함은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대법원 2010. 8.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 31)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251면.
- 32) 우리나라 판례(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판결) 및 다수설.
- 33) 대법원은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이에 대하여 금감원 분조위는 이 판결은 단지 유족이 피보험자에 대한 부검을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험금청구자인 유족이 제시한 사실(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잠들었다가 저체온증, 질식,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앞의 괄호 안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비과학적 주장)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새겼다. 과거에는 방에 선풍기를 켜 놓고 술에 취하여 자다 사망한 경우를 외래사고로 보았으나(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2373 판결) 현재의 의학수준에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특히 뒤에서 보는 자살하였다는 보험자의 증명에 비하여 자살하지 아니하였다는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은 재해사고의 우연성의 증명단계에서는 엄격하게 증명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³⁴⁾ 이는 경험칙상 인간은 자살이나 재해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보험금청구자는 상해 또는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상해 또는 재해사고라는 점과 그 사고와 발생한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비교적 느슨한 증명책임을 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자살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엄격하게 증명하여 비로소 면책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나아가 상해사고의 급격성과 외래성은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하지만 우연성은 보험자의 반증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보는 입장이³⁵⁾ 있다. 이 입장은 보험금청구자의 보호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일본에서도 최고재판소는 우리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우연성의 객관적 증명책임은 보험금청구자측에 있다고 새기는 청구원인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는데,³⁶⁾ 이 판결에 대하여는 우연성 증명은 일응의 추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비판론이 없지 않다. 비판론의 논거는 청구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상해보험의 속성상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시에 이미 피보험자는 사망하여 있고 목격자의 증언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청구자측은 간접증거의 집적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결과 실제로는 피보험자가 우발적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긴다. 특히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라는 소극적 사실의 증명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실제로 자살인 것을 우발적 사고로 취급하면 보험단체에 그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 된다. 이 문제는 자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확증할 증거가 없고 피보험자의 사망에 우발적 요인이 작용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인 때에는 청구원인설의 입장에서 재해사망보험의 유족보호기능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줄 수밖에 없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

34) 유관우·이현열, 앞의 책, 252면.

35)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870면.

36) 일본최고재판소 2001. 4. 20. 판결·民集55卷3号682頁.

서도 사고의 우연성에 대한 설득책임 즉 객관적 증명책임을 청구자측에 분배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기도 하다.

3. 자살면책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재해사망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³⁷⁾ 이 경우 자살의 증명은 매우 엄격한 증명이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으로 이해된다. 자살은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외부적 사정을 보고 귀납적으로 추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모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경험칙상 자살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 예컨대 과도한 채무, 가정불화, 실직, 질병, 직장 내 스트레스, 범죄혐의 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유서의 존재나³⁸⁾ 일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전송, 치사량의 농약이나 노끈 구입 등 아주 치밀한 죽음의 준비행위와 같은 매우 제한적 사실만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자살이란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능에 반하기 때문에 어떤 사망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살이 아니라는 추정이 성립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험자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할 정도로 명백한 주위의 정황사실” 을 증명하여야 한다.³⁹⁾

금감원 분조위 조정례 중에는 피보험자가 자해행위 착수 전 단계에서 한여름 인데도 거실 내부 창문을 닫고 방에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쓰러져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외상이 없고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 과음, 직접사인 : 심장마비’ 로 추정된 사안에서 피보험자에게 가정문제, 경제문제 등 다소

37)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38) 유서는 없었지만 피보험자가 시야가 확 트인 직선구간의 철로에 앉아 약 100m전방에서 사고 열차의 기적소리가 들리는데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앉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사망의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자살이라고 본 대구고등법원 2005. 1. 19. 선고 2004나1487 판결.

3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과 동일한 표현;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372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고통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평소 자주 죽고 싶다는 말을 하여왔던 것은 사실이 나⁴⁰⁾ 이와 같은 자해의 주관적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보아 자해의 실행으로 볼 수 있는 자해행위가 착수되고 그 행위의 결과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방화 등 자해의 직접적인 실행행위 없이 다만 신나를 뿌리고 술을 마신 행위 만으로는 자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예컨대 피보험자가 자살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해할 목적으로 한쪽 다리를 철로에 올려놓고 있다가 달리는 기차에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 가스를 흡입하려다 부탄가스통이 폭발하여 사망한 경우는 우발성이 없어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⁴¹⁾

또 피보험자가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후 선풍기를 틀어 놓고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보았고, 망인이 사망사고 이전 방화 및 손목자해를 한 사실,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 한 사실, 사고 1주 전에 수면제 분실을 이유로 총 28일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망인이 스스로 불 끄는 활동을 하고, 손목자해 정도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점, 망인이 복용한 수면제는 과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자살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⁴²⁾

한편,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청구자의 엄격한 증명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도 자살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자살사실의 증명은 사망자의 생전의 심리상태에 관련된 문제가 있고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불분명한 경우나 유서 등 자살을 직접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자살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따라 자살을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망수단과 방법, 신변정리, 각오 등 자살할 것임을 암시한 전형적인 자살상황을 거증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⁴³⁾ 이른바 일응의 추정이론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40) 금감원 분조위 1999. 11. 16.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99-60호.

41) 양승규, 앞의 논문, 213면.

42)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3851 판결

43)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第3版],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6, 220頁.

이 사고사 또는 과실사가 아니라는 점을 일응의 추정의 이론에 따라 증명하면 된다고 보는 점이 우리와 다르다.

4. 보험료지급지체를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

이 사건 피고 생보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료불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나, 여러 정황사실로 보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여지는 2003. 11. 10. 무렵에서 수개월 지난 때에 해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해지는 사고발생후의 해지여서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지급책임에 영향이 없다.

5.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이 사건 피고 생보사는 이 사건 보험수익자인 아들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⁴⁴⁾ 따라서 피고 생보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대상 판결의 시사점

대상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증명책임의 소재와 증명의 정도 간에 엄밀한 등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은 상해(또는 재해) 보험금지급책임의 존부를 확정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당장 대상판결의 1심법원과 항소심 및 대법원 판결 간에 그와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만일 법규분류설에 철저히하자면 이 사건

4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292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에서 자살의 증명이 불충분하였는지 따지기 전에 당사자 간에 증명의 순서가 명확하였어야 한다고 본다. 즉, 먼저 보험금청구자가 재래사고임을 증명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자가 면책사유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보험금청구자가 지는 우연성요건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이 보험금청구자를 위한 입법정책일 수는 있지만 법규분류설의 적용으로서는 엄밀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이 한 건의 약관에서 상해사고의 요건으로서 우연성과 외래성을 규정하면서 동시에 보험자면책사유로서 고의사고를 규정한 것이 모순이라는 입장도 유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각에서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에서는 상해보험상품이 영미업계의 상품을 모방하였다는 점에서 영미의 상해보험요건에 대하여 추적하는 연구도 많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비교법적 관점의 접근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 학계는 보험사고에 관한 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입장, 고의면책조항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입장, 보험사고 규정과 고의면책규정의 양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이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⁴⁵⁾ 우리 학계도 미룰 수 없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영미의 상해보험계약의 상해사고요건, 그것이 일본에 도입된 후 변질되었는지 여부, 다시 한국에 도입된 후의 사정 등을 추적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만 필자는 현행 상해보험약관에서 재해요건과 고의사고에 대한 보험자면책을 규정한 것이 기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는 일본의 유력설에 대하여 경청할만하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보면 재해증명 후에 자살면책의 증명이 있게 되지만, 재해증명을 엄밀하게 하여야 한다면 자살증명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해증명은 보험금청구자가 하여야 하고, 자살이라는 사실은 보험자가 하여야 한다는 법규요건분류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재해의 증명의 정도를 느슨하게 요구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의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된다. 자살의 증명 역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이전에 재해에 대한 증명 역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재해요건을 규정한 약관도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법규요건분류설을 취하는 한 상해사고에서 보험사

45) 山本哲生, 前掲論文, 9~11頁.

고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갖추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사망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 보험금청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먼저 보험금청구자가 이를 증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사고가 피보험자의 자살 등 고의사고여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넘어 온다. 보험금청구자와 보험자의 증명은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증명’ 처럼⁴⁶⁾ 상대방의 반증에 의하여 뒤집히지 아니하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추정하는 증명은 아니다.

이상이 판례와 다수설의 기본입장인 만큼 독일보험계약법처럼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청구자와 보험자가 각기 어느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는지는 소송실무 운용상 문제로 남아있고 담당 재판부의 입장과 당사자의 소송전략 및 증명하는 능력에 따라 혼선이 생긴다. 평석 대상 판결의 사안처럼 사고발생시에 피보험자도 사망한 상태이고 목격자도 없어 사고경위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보험금청구자가 위 요건사실을 모두 증명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며, 재해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진다. 그렇다고 하여 그 요건을 느슨하게 요구한다면 보험자의 자살면책은 적용범위가 크게 줄어든다. 아울러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린 사례가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이는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자살이 의심스러운 경우에 민감한 문제가 된다.

이 사건 보험금청구자는 피보험자인 망인이 가출신고(2003. 11. 10.) 된 후 10여년이 지난 2014. 6. 25. 저수지에서 망인의 승용차 안의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을 들어 우연한 외래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은 그것으로서 재해사고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전제하였다. 이는 당사자주의 하에서 보험사가 재해의 우연성을 따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연성의 증명은 일응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입장일 수도 있다. 이 사건 피고 생보사는 재해여부를 다투기 보다는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투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이거나 패소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에서 보험금청구자가 지는 재해에 대한 증명은 매우 느슨한 것이며, 이는 우연성 요건의 증명에서 보험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연성을 추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설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 되었다.

46) 이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横田尚昌, “傷害保險金請求における事故の偶然性の證明”, 生命保險論集, No.156, 2006, 175頁.

보험금청구자의 ‘재해’에 대한 증명이 매우 느슨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보험자가 행한 망인의 자살에 대한 증명을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험금지급책임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은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증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함으로써, 결국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무거운 증명책임은 재해에 대한 보험금청구자의 가벼운 증명책임과 같은 수준의 증명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사건 판결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소송의 운용에서 재해사고의 우연성을 추정하는 것에 가까워진 결과로 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입장은 재해사고의 요건을 모두 엄격히 증명하여야 한다면 보험금청구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린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으로 인하여 보험금부정청구 사례가 늘 수 있고, 여전히 재해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다른 판결들과 통일성을 결하는 결과가 되었다. 더구나 자살에 대한 엄격한 증명과 균형이 맞는 것인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자살 사실은 피보험자가 생존하지 아니하고 그 성격상 직접증거보다는 여러 간접증거를 모아서 정황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 보험금청구자는 어머니가 운전부주의로 저수지에 추락·사망하였으므로 재해사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여성이 남편의 의문의 사망 후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자택의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한 사실, 남편의 시신을 실어 나른 것으로 보이는 피보험자 소유 승용차의 깔판 바닥을 교체한 사실, 남편을 흥기로 살해한 후 북한강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 가출한 후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실, 망인에 대한 부검이나 차량감정결과를 볼 때 차량사고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히 도로가 경사지도 아니며, 도로부터 저수지까지의 거리가 20m에 이르는데 2003년경 망인의 나이나 성별에 비추어 운전부주의로 도로를 20m이상 이탈하여 저수지에 빠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이 증거만으로는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증명으로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 실직, 부모의 죽음과 가족 갈등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던 피보험자가 1시간 정도 스스로 운전하여 평소 등산을 즐기던 산에 가서 나무에 목을 맨 시신

으로 발견된 사건에서 노끈을 망인이 준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사실 등을 들어 자살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⁴⁷⁾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의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만일 피고 생보사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증명하기에 앞서 보험금청구자에게 재해의 우연성에 대한 증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 법원이 증명의 정도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실시할지 의문시된다.

IV. 맺는 말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원은 재해요건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들고 있으나 그 요건 간의 상대적 관계는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 대상판결에서 보듯이 재해요건에 대한 보험금청구자의 증명책임과 면책사유인 자살에 대한 보험자의 증명책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판결문을 통하여 알기는 어렵다. 그 결과 재해보험약관의 규정에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재해 인정을 둘러싼 판결의 일관성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학계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과제이며 후속연구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47) 이에 대하여는 김선정,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것이 질병사망인지 여부”, 『생명보험』 2014년 8월호. 이에 비하여 심신상실상태에서의 자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김선정, “군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생명보험』, 2016년 5월호 참조.

〈참고문헌〉

- 김선정,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자살로 사망한 것이 질병사망인지 여부“, 생명보험, 2014년 8월호.
- 김선정, “군복무 중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이 자살인지 여부와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생명보험, 2016년 5월호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 유관우·이현열, 인보험약관해설, 엘림P&G, 2006.
- 양승규, “생명보험의 재해담보특약에 따른 재해사고“, 제남 강위두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상사법논총(하), 1996.
-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 최병규, “의료과실과 상해보험 보험사고“, 기업법연구, 제27권 제4호, 2013.
- 江頭憲治郎, “傷害保險契約における偶發性の要件と主張・立證責任“, 保險法判例百選, 有斐閣, 2010.
- 岡本知浩, “保險事故の偶發性の立證責任と立證の程度“, 保險事例研究會レポート, 第256号, 2011.
- 山本哲生, “保險事故の偶然性について“, 生命保險論集 No.160, 2007.
- 山下友信, 保險法, 有斐閣, 2005.
- 山下友信 外, 保險法, 第3版補訂版, 有斐閣, 2016.
- 小林登, “「傷害を直接の原因とする死亡」の意義“, 保險法判例百選, 有斐閣, 2010.
- 桜澤隆哉, “傷害保險契約における保險事故と偶然性・外來性-平成19年の外來性をめぐ
る三つの最高裁判決を契機として-“, 生命保險論集, No.164, 2008.
- 日本生命保險生命保險研究會, 生命保險の法務と實務第3版, 金融財政事情研究會, 2016.
- 中西正明, 傷害保險契約の法理, 有斐閣, 1992.
- 横田尚昌, “傷害保險金請求における事故の偶然性の證明“, 生命保險論集, No.156, 2006.

Abstract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of fortuitous and unexpected accident in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ntracts are an important issue that determines the existence of the right of the insured. In Korea, it is interpreted that the insured must charge the burden of proof of the accident requirement. However, the degree of proof is actually very weak. In particular, the degree of proof is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insurer prove of the insured' suicide. If the insurer does not prove suicide sufficiently, it has to pay insurance money, Even in this commentary case of Supreme court, the insurer seems to have focused on proving suicide but he failed to prove. It is Japan's strong point that such problem is caused by contradiction to the provisions of the insurance policy itself.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clauses without contradiction and guarantee the uniformity of decisions of court. This case left questions on how to solve the conflict caused by the contradictions of the accident insurance policy provisions.

※ Key words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violence, fortuity, externality, burden of proof, suicide exemption